

행 정 자 치 부

주의 · 시정 요구

제 목 공무국외여행 실시 및 사후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원주시, 삼척시, 횡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화천군, 양구군, 인제군,
고성군, 양양군

내 용

강원도 인제군 등 10개 시·군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011 공무원 아이디어경진대회 우수제안자국외정책연수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, 귀국 후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(이하“여행보고서”라 한다)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외여행에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전산 관리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.

「공무원행동강령」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차량·선박·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,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산 입력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

그런데 위 인제군 등 10개 시·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여행목적과 달리 단순 시찰·관광이 계획에 포함되거나 공무국외여행 등을 마친 후에 여행보고서 및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면서 여행보고서 및 항공마일리지를 전산에 입력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는 등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.

조치할 사항 원주시장, 삼척시장, 횡성군수, 영월군수, 정선군수, 화천군수, 양구군수, 인제군수, 고성군수, 양양군수는

[주의]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실시 및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「공무원행동강령」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된 항공마일리지를 정리하여 전산입력 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